의 반 호

1698

울산광역시 중구 육이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20. 12. 3.(목)

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12. 3.(목)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12. 14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바르고 건강한 아이들로 키우기 위한 보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 도록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 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고자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O 위탁사무명 :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
- O 위탁의 필요성
 -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
 -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장경험이 많은 위탁체의 위탁 운영이필요함.
- O 위탁사무 내용
 - 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및 운영업무 전반
 - 육아종합지원센터 클로버부모교육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
O 위탁시설 개요

시설명		소재지	규모	종사자	
울산광역시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		종가8길 66 (복산동)	지하1층, 지상3층 (대지 1,673㎡, 건축연면적 1,453.08㎡)	9명 (센터장1, 보육전문요원4, 운영요원4)	
구 분	시 설 구 성			면적(m²)	
지하1층	강당·영상실, 자료·의자보관실, 기계실				310.91
지상1층	장난감세상(장난감대여실), 아기숲놀이터(영아놀이체험실), 지혜등대도서관, 맘카페, 아이세상보육실				440.81
지상2층	바다친구놀이터(유아놀이체험실), 프로그램놀이실, 수유실, 테라스쉼터				334.74
지상3층	센터장실, 사무실, 상담실1·2, 세미나실,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				366.62
위치도	대한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				

- 위탁기간: **3년(2021. 4. 1. ~ 2024. 3. 31.)**
- O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
- 소요예산: 720,200천원

다. 근거법규

- 「영유아보육법」제51조의2(업무의 위탁)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39조의3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)
- O 「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제13조(설치 및 운영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경희)

- O 영유아의 바른 교육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영유아 보육관련 경험 과 전문적 기술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제반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「영유아보육법」

제51조의2(업무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

- 1.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
- 2.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등에 관한 업무
- 3.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
- 4.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
- 5.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
- 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- 1. 수탁기관이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
- 2.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

제39조의3(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)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 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·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
- 2.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(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)
- 3. 대표자의 경력사항
- 4.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
- 5. 법인 · 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
- 6. 법인 · 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
- 7.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(예산서를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삭제
-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 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(이하 이 조에서 "수탁기관"이라 한다)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「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

- 제13조(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해야 한다.
-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를 법 제51조의2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 위탁운영자(이하 "센터수탁자"이라 한다.)를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선정하며, <u>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</u>. 이 경우 그 기간 만료 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.